

[별지 제21호의3서식] <신설 2007.4.17>

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서				
징 수 의 사 무 자	상 호(법인명)		대 표 자	
	사 업 장 주 소			
	사업자등록번호		업 종	
승 인 기 간		년 월 징수분부터		
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·납부할 수 있음을 승인하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8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세무서장				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